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금융위, 금융지주회사법 재추진

- 금융위는 정부 소유 은행지주회사의 민영화 촉진, 은행자본 확충 등을 통해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난 4월 국회에서 부결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재추진함.
 - 대형 은행들이 대부분 지주회사 체제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상황에서 은행법 개정안만 국회를 통과해 반쪽짜리 금산분리 완화라는 지적을 받아왔음.
 - 이에 비금융주력자(이하 산업자본)에 대한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‘금융지주회사법’ 일부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.
- 개정안의 주요 골자로는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%에서 10%로 상향조정하고 산업자본이 PEF(Private Equity Fund), 사모투자전문회사에 투자자로 출자할 수 있는 한도도 10%에서 20%로 변경됨.
 - 또 서로 다른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이 각각 유한책임사원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한 지분 합계액의 한도 역시 30%에서 40%로 높아짐.
 - 이는 실제로 지난 4월 부결된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9%, PEF에 대한 단독 산업자본 출자 한도를 18%로 낮춘 것보다도 높은 수준임.
- 정부에서 마련한 동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개정안에 대해 논의된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전함.
 - 본 개정법률의 시행일은 2009년 10월 10일로 예정하고 있으며, 이는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보유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‘은행법’ 개정법률의 시행일과 맞춘 것임.

(‘금융지주회사법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및 정부안 국회 제출,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, 6/8)